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참 고 자 료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9. 9. 11(수)	담당부서	통상분쟁대응과 산업피해조사과
담당과장	정하늘 과장(044-203-4880) 한상덕 과장(044-203-5860)	담 당 자	박근형 사무관(044-203-4884) 송병철 사무관(044-203-5864)

WTO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상소 판정 결과

- 1심(패널)에서의 우리측 승소 판정 유지 -

□ 세계무역기구(WTO)는 9.10.(화) 17:00(제네바시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조치('15.8.19)**를 일본이 제소한 WTO 분쟁의 최종보고서(상소기구 보고서)를 발표함.

*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

** 일본 SMC社에11.66%, CKD社 및 토요오키社에 각각 22.77% 부과

□ WTO 상소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함에 따라, 기존의 우리나라 승소 판정이 유지됨.

○ 패널설치요청서 내용 흠결로 인해 패널심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이 번복되었으나, 이어진 상소기구 심사에서 4개 사안에서는 우리 조치가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았으며, 1개 사안(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입증)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함.

○ 패널에서 우리가 패소한 유일한 실체적 사안(인과관계 판단시 가격비교 방법상의 흠결)은 번복되었으며, 우리측이 승소한 3개 쟁점은 모두 유지되었음

- 일측이 패널에서 승소한 2개 절차적 쟁점은 그대로 유지

□ 금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동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로서, WTO 협정에 따라 동 보고서가 회람된 2019.9.10 로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될 예정임.

□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 및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박근형 사무관(☎ 044-203-4884) 또는 산업피해조사과 송병철 사무관(☎ 044-203-58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분쟁 경과

○ ‘15.1.20. 무역위, 일본산 밸브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최종판정

* ‘14.2.21 조사개시/ ’14.6.26 예비판정/ ‘14.10.23 공청회

○ ‘15.8.19. 기재부, 11.66~22.7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 ‘16.3.15. 일본 정부, WTO 제소

○ ‘16.4.28. 양자협의 진행

○ ‘16.6.9. 일측, WTO 패널 설치 요청

○ ’16.7.4. 패널 설치

○ ‘16.8.29. 패널 구성

○ ‘17.3.1~2. 1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 ‘17.5.30~31. 2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 ‘18.4.12. 패널 판정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18.5.28. 일측,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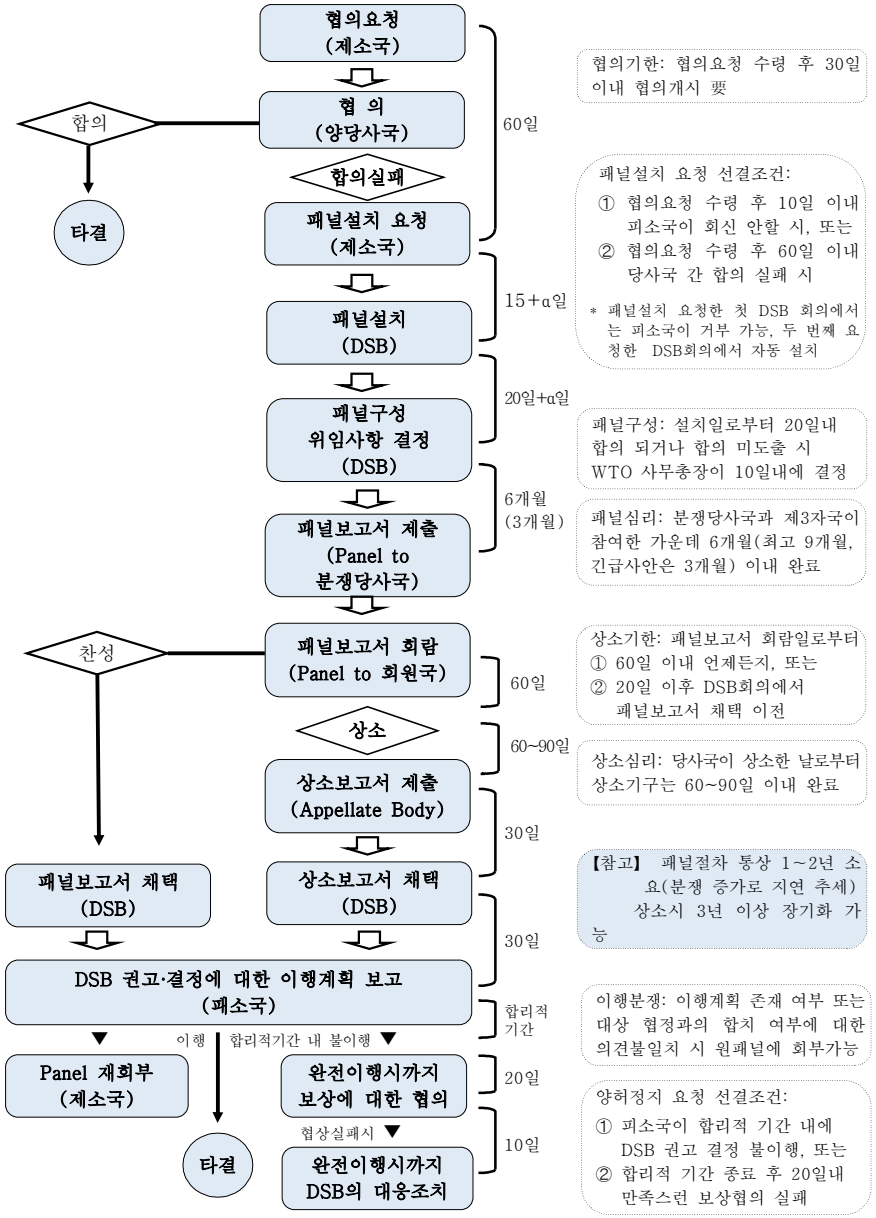
○ ‘19.4.4~5. 상소심 구두심리 회의 개최

○ ‘19.9.10. 상소 판정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참고 2 상소 판정 요지

쟁점		순번	쟁점, 패널, 상소 판정	패널	상소
실체적 쟁점	**가격효과** (3.1, 3.2조)	1	**(쟁점)** 덤핑수입의 국내 동종상품에 대한 가격인하 혹은 인상억제 등 영향 여부 **(패널)**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상소) 가격비교방법 부적절, 고가판매와 가격인하간의 합리적 설명 부족**	**승소**	**부분 번복**
	물량효과 (3.1, 3.2조)	2	**(쟁점)** 덤핑수입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 증가여부 **(패널)**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상소) 심사 완료 불가**	**승소**	**유지**
	국내산업 범위 (3.1, 4.1조)	3	**(쟁점)** 국내산업의 범위를 적절히 설정했는지 여부 **(패널)**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상소) 심사 완료 불가**	**승소**	**유지**
	국내산업 피해 (3.1, 3.4조)	4	**(쟁점)** 피해분석이 객관, 타당했는지 여부 **(패널)**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상소) 심사 완료 불가**	**승소**	**유지**
		5	**(쟁점)** 자금조달 능력, 덤핑마진의 크기를 적절히 고려했는지 여부 **(패널)** 적절히 고려 **(상소) 패널 판정 유지**	**승소**	**유지**
	인과관계 (3.1, 3.5조)	6	**(쟁점)** 덤핑 이외에 산업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 검토 여부 **(패널)**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승소**	**不상소**
		7	**(쟁점)** 인과관계 분석時 가격효과 등 별도심사 가능 여부 **(패널)** 별도심사가 가능하며, 이에 근거한 가격비교방법상 흠결로 인해 협정 비합치 **(상소) 별도 심사는 부적절하며, 따라서 비합치 판정도 번복**	패소	**번복 (승소)**
		8	**(쟁점)** 덤핑의 효과를 통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 판정이 객관, 타당한지 여부 **(패널)** 상기 인과관계 판정이 협정위반이라는 근거 없음. **(상소) 패널 판정 유지**	**승소**	**유지**
		9	**(쟁점)** 덤핑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걸러냈는지 여부 **(패널)** 덤핑 이외 요인에 기인한 피해를 걸러내지 못했음을 일본이 입증 못함. **(상소) 패널 판정 유지**	**승소**	**유지**
절차적 쟁점	**비밀정보 처리** (6.5조)	10	**(쟁점)** 비밀정보 분류요청시 ‘정당한 사유’의 명확한 제시 여부 **(패널)** ‘정당한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밀정보로 처리한 것은 협정위반 **(상소) 패널 판정 유지**	패소	유지
	공개요약본 정보수준 (6.5.1조)	11	**(쟁점)** 기업의 자료제출 시, 그 자체로도 이해가능한 공개요약본 제출의무 이행 여부 **(패널)** 공개 요약본을 제공하지 않아 협정위반 **(상소) 패널 판정 유지**	패소	유지
	핵심적사실 통보 (6.9조)	12	**(쟁점)** 판정의 근거가 된 핵심적인 사실을 최종 판정(무역위 최종의결시) 이전에 당사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패널)**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패널) 심사 완료 불가**	**승소**	**유지**
	최종판정에 대한 공고 (12.2, 12.2.2조)	13	**(쟁점)** 최종판정에 대한 적절한 공고를 하였는지 여부 **(패널)**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승소**	**不상소**

붙임 3 **WTO 분쟁절차도**



협의기한: 협의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 협의개시 要

패널설치 요청 선결조건:
① 협의요청 수령 후 10일 이내 피소국이 회신 안할 시, 또는
② 협의요청 수령 후 60일 이내 당사국 간 합의 실패 시

* 패널설치 요청한 첫 DSB 회의에서는 피소국이 거부 가능, 두 번째 요청한 DSB회의에서 자동 설치

패널구성: 설치일로부터 20일내 합의 되거나 합의 미도출 시 WTO 사무총장이 10일내에 결정

패널심리: 분쟁당사국과 제3자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최고 9개월, 긴급사안은 3개월) 이내 완료

상소기한: 패널보고서 회람일로부터
① 60일 이내 언제든지, 또는
② 20일 이후 DSB회의에서 패널보고서 채택 이전

상소심리: 당사국이 상소한 날로부터 상소기구는 60~90일 이내 완료

【참고】 패널절차 통상 1~2년 소요(분쟁 증가로 지연 추세)
상소시 3년 이상 장기화 가능

이행분쟁: 이행계획 존재 여부 또는 대상 협정과의 합치 여부에 대한 의견불일치 시 원패널에 회부가능

양허정지 요청 선결조건:
① 피소국이 합리적 기간 내에 DSB 권고 결정 불이행, 또는
② 합리적 기간 종료 후 20일내 만족스런 보상협의 실패